

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(별표 1)중 도시개발과 소관 제7호 다음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 야 별	일련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도시개발과	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업단지 지정권자인 도 지사가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의 다음사무 가. 지방공단실시계획승인(변경) 나.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다.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협의 라.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마. 국,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바. 시설부담금의 부과 사.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처리를 위한 검사 의뢰 아.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자.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차.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 보고지시 및 검사 타. 사업시행자의 감독조치 및 처분고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제18조제1항 · 동법 제19조의2 · 동법 제21조 · 동법 제26조 · 동법 제27조 · 동법 제33조 · 동법 제37조 · 동법 제37조 · 동법 제37조 · 동법 제47조 · 동법 제48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